〈서식-4〉 격 리 면 제 서

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여부(■ 해당, □ 미해당)

[원본]

	성명 DANIELE BET	성별 [O] 남 [] 여
	국적 이탈리아	생년월일 1992-04-24
격	여권번호 YA8219687	휴대전화(본인) +393938994241
리	체류자격(외국인만) C4	한국내 긴급연락처 010-5099-1385 (초청기업, 가족 등)
면	한국내 주소(상세기재) 경기도 오산시 원동로 5호텔 D (전화:010-5099-1385)	
제	직업(직장/직위명) Euclid Labs / Engineer	초청기업 및 담당자 연락처 010-5099-1385 LG전자
	출발국가 이탈리아	출발일 및 편명 20210927 / KL855
자	입국예정일 20210928	격리면제 기간 20210928 ~ 20211012
	출국예정일 20211012	행사장소(장례식장 등) LG전자 평택공장 (경기도 평택시 엘지로 222)

격리면제사유 11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- 중요한 사업상 목적 첨부서류 ※ 격리면제신청서 중 '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 및 방역계획' 뒷면 첨부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을 위해 위의 사람은 대한민국 입국 후 14일간 격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, 위와 같은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한 바, 담당관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한민국 입국 후 격리면제를 허가합니다.

※ 주의사항

- 동 면제서는 1회에 한해 인정되며,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국 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.
- 대한민국 입국 시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(최대 1박2일 대기),음성일 시 격리가 면제됩니다
 - *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체채취 후 숙소 등에서 결과대기
- <mark>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입국 후 진단검사에서 양성인 경우 또는 접촉자(감염병의심자)로 분류될 경우 면제효력이</mark> 즉시 중단되고 격리되며. 기존 격리수칙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.
-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한국 입국 전 14일 이내에 베타형·감마형·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(기지정 또는 신규지정)에 체류·출국·경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면제서 효력은 즉시 중단됩니다.
- 입국 후에는 대한민국 검역당국의 안내를 받아 설치한 자가진단앱에 증상 여부를 매일 입력하고 담당 공무원과 통화하여 건강상태를 확인받아야 합니다.
- 면제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, 6~7일 사이 진단검사를 실시(국비지원)하고 그 결과(음성확인서)를 8일이내 심사부처 및 주소지소관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하며, 미제출시 격리면제 효력이 중단되고 즉시 격리 조치될 수 있습니다.
- 격리면제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,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 및 방역계획 대로 이행(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자는 해당없 해야 하며, 필요시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. 면제목적 외 활동을 할 경우 면제의 효력이 중단되고 격리조 되며,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.
- 동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,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이 불허되거나 강제퇴거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격리면제자가 격리면제 기간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류할 경우, 면제서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, 신고한 후 방역절차에 따라 입국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까지 자가 또는 시설 (자기부담 최대15만원) 격리해야 합니다.

격합 멸제선 (직급) 주무관 (성함) 최진섭

(연락처/이메일)

044-203-4261 js0107@korea.kr

2021년 09월 13일

